

2018)소방시설관리사 1차 상, 하권 2차 정오표[2018.3.29.]

- 상권 -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-8페이지	<p>※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 관리에 대한 내용 없었음</p> <p>(3) 시도지사는 매년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10">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연번</th> <th colspan="4">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</th> <th rowspan="2">소방대상물 개소수</th> <th rowspan="2">소방특별 조사의 결과</th> <th rowspan="2">소방설비의 설치명령 현황</th> <th rowspan="2">소방교육 실시현황</th> <th rowspan="2">소방훈련 실시현황</th> <th rowspan="2">그 밖에 화재예방·경계여 필요한 사항</th> </tr> <tr> <th>대상명</th> <th>위치(주소)</th> <th>종류</th> <th>지정일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										연번	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				소방대상물 개소수	소방특별 조사의 결과	소방설비의 설치명령 현황	소방교육 실시현황	소방훈련 실시현황	그 밖에 화재예방·경계여 필요한 사항	대상명	위치(주소)	종류	지정일자											
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				소방대상물 개소수	소방특별 조사의 결과	소방설비의 설치명령 현황	소방교육 실시현황	소방훈련 실시현황	그 밖에 화재예방·경계여 필요한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상명	위치(주소)	종류	지정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-184페이지	<p>(1)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등</p> <p>- 신설</p> <p>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[공사업법신설]</p> <p>제2조의2(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)</p> <p>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,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, 설계도서·시방서(示方書)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8.2.9.]</p> <p>제20조의3(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)</p> <p>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,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8.2.9](19년 2월 시행)</p> <p>제26조의3(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</p> <p>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·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·기술인력 보유 현황,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,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</p> <p>2.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,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</p> <p>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, 발주자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8.2.9](19년 2월 시행)</p> <p>제40조(과태료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9.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(신설)</p> <p>10.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(신설) - 방염 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(19년 2월 시행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
<p>3-232페이지</p> <p>7. - 3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다중이용업주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교육대상 종업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①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</p> <p>②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완공신고를 하기 전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③ <u>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통보를 한 경우</u>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p><u>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까지</u>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2) <u>수시교육</u> -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(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.)</p> <p>(3) <u>보수교육</u> <u>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</u></p> <p>(4) <u>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</u> <u>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</u></p>	다중이용업주	교육대상 종업원	<p>①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</p> <p>②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완공신고를 하기 전</p>	<p>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</p>	<p>③ <u>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통보를 한 경우</u></p>	<p><u>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까지</u></p>
다중이용업주	교육대상 종업원						
<p>①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</p> <p>②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완공신고를 하기 전</p>	<p>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</p>						
<p>③ <u>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통보를 한 경우</u></p>	<p><u>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까지</u></p>						
<p>3-238페이지</p> <p>3</p>	<p>2. 비상구</p> <p>1) 공통 기준</p> <p>(1) 설치 위치 영업장 주된 출입구에서 반대 방향에 설치하되 <u>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</u> 다만,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(2) 비상구 규격 가로 75 cm 이상, 세로 150 cm 이상(비상구 문틀을 제외)으로 할 것</p> <p>(3) 비상구 구조 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. 다만,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<u>불연재료(準不燃材料) 이상의 것으로</u> 구획된 부속실(전실)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					
<p>3-239페이지</p>	<p>3) 영업장의 위치가 4층(지하층은 제외한다) 이하인 경우의 기준</p> <p>(1)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(가로 75 cm 이상, 세로 150 cm 이상, 높이 100 cm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) 또는 부속실(<u>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</u>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 cm 이상, 세로 150 cm 이상인 것을 말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</p> <p>(2)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<u>다만,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,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
4-101페이지	<p>4 위험물의 <u>저장 또는</u> 취급 기준</p> <p>• 벌칙 :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- <u>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</u></p>								
4-102페이지 2. 제조소 등	<p>• 벌칙 : <u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</p>								
4-104페이지 3. 제조소 등의 설치·변경 등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내 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방 법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벌 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설치</td> <td>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허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내 용	방 법	벌 칙	설치	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	허가	<u>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u>
구 분	내 용	방 법	벌 칙						
설치	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	허가	<u>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u>						
4.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	<p>• 벌칙 :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- <u>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</u></p>								
4-105페이지 5.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- 시도지사	<p>• 벌칙 :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: <u>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</u></p>								
4-107페이지 7.- 3 - (2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5%;">내 용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벌 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·도지사에게 미제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천5백만원 이하</u></td> </tr> <tr> <td>예방규정이 적합지 않아 변경을 명하였는데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시·도지사에게 제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일천만원 이하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내 용	벌 금	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·도지사에게 미제출	<u>1천5백만원 이하</u>	예방규정이 적합지 않아 변경을 명하였는데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		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시·도지사에게 제출	<u>일천만원 이하</u>
내 용	벌 금								
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·도지사에게 미제출	<u>1천5백만원 이하</u>								
예방규정이 적합지 않아 변경을 명하였는데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									
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시·도지사에게 제출	<u>일천만원 이하</u>								
4-115페이지 16. 2 - (2)	<p>(2)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 하는 자 <u>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</u></p> <p>• 벌칙 : 위반한자 - <u>1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</p>								
(3)	<p>• 벌칙 :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,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- <u>1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</p>								

2018)소방시설관리사 1차 상, 하권 1차 정오표[2018.1.22]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란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				
2-20페이지 19번 문제 해설	$100 \text{ mAq} \times \frac{10.3325 \text{ N/cm}^2}{10.332 \text{ mAq}} = 98 \text{ N/cm}^2 \rightarrow 100 \text{ mAq} \times \frac{10.1325 \text{ N/cm}^2}{10.332 \text{ mAq}} = 98 \text{ N/cm}^2$						
2-135페이지 5번 문제 답	② → ①						
2-146페이지 ⑥ 청정소화약제의~	② 최대허용설계농도 <u>30%</u> 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가 가장 높다.						
3-9페이지 ② 영유아, 학생 등에~	<p>(1) 소방청장은 <u>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</u> <u>(1-1)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</u></p> <p>(2) ~~~실시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(3) 삭제</u></p>						
3-54페이지 ⑦ - (6)	<u>(관리업은 6개월)삭제</u>						
3-146페이지 13. ② 첫째줄	(1급 중 연면적 1만5천m ² 미만 및 <u>2급, 3급</u>)						
3-170페이지 ⑦ - (3)의 ①, ②, ③ 내용변경	<p>① 작동기능점검(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) 및 종합정밀점검: 소방시설관리사와 보조기술인력</p> <p>②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(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외의 대상물)에 대한 작동기능점검: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기술인력</p> <p>*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</p>						
4-117페이지 19.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치명령등의 권한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<u>소방청장</u>(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),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u>소방청장</u>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조치명령등의 권한자		<u>소방청장</u> (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),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	<u>소방청장</u> 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
조치명령등의 권한자							
<u>소방청장</u> (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),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						
<u>소방청장</u> 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						
5-147페이지 ⑤의 표	<p>충전비와 관련된 내용 삭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body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질소등의 비활성기체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6.0~</td> </tr> <tr> <td><u>충전비</u></td> <td><u>1.5 이상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질소등의 비활성기체	6.0~	<u>충전비</u>	<u>1.5 이상</u>		
질소등의 비활성기체	6.0~						
<u>충전비</u>	<u>1.5 이상</u>						
5-170페이지 ⑥의 (3) 표 5-175페이지 10번 문제 해설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소 화 약 제</th> <th>최대허용 설계농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HFC-23</td> <td><u>3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소 화 약 제	최대허용 설계농도(%)	HFC-23	<u>30</u>		
소 화 약 제	최대허용 설계농도(%)						
HFC-23	<u>30</u>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
5-284페이지 PART3. 2 - (1)의 표	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	-	구조대 · 피난사다리 · 미끄럼대 · 완강기 · <u>다수인피난장비</u> · <u>승강식피난기</u>
5-319페이지 4 - (3)	-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<u>0.15 Mpa 이상</u>		
5-368페이지 4. 2 송수구 설치기준 (제4조) 내용 변경	<p>송수구 설치기준 (제4조) (1)~(10)까지 삭제</p> <p>송수구 설치기준 (제4조)</p> <p>(1)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.</p> <p>(2)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.5 m 이상 1 m 이하</p> <p>(3)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설치 다만,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 가능</p> <p>(4)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, 스프링클러 · 물분무 · 포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시 제외</p> <p>(5) 송수구의 부근에는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(선택밸브를 설치 시 제외)</p> <p>(6)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 설치기준</p> <p>①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· 자동배수밸브 ·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</p> <p>②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·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</p> <p>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,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</p> <p>(7)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. ※ 가연성가스의 저장 ·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.5 m 이상 폭 2.5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</p> <p>(8)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</p> <p>(9)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 다만,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제외</p>		
6-88페이지 106번 보기	• <u>전역</u> 방출방식의 표면화재 방호대상물		
6-168페이지 48번 답	④ → <u>③</u>		
6-171페이지 57번 지문 ①, ②, ③, ④에서	총리령 → <u>행정안전부령</u>		
6-173페이지 61번 문제 해설	(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) → (<u>행정안전부령</u> 으로 정하는 기간)		
6-199페이지 29번 해설	$V = \frac{4Q}{\pi D^2} \text{이므로}$ $V_2 = \frac{4 \times 0.3}{3 \times 0.1^2} = 40 \text{ m/s}$ $V_1 = \frac{4 \times 0.3}{3 \times 0.2^2} = 10 \text{ m/s}$		
6-206페이지 55번 지문①	① 호스릴 방식의 ~		

해당 페이지	정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
6-208페이지 63번 문제 지문③	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 <u>입</u> 하여야 하는 ~

